##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 305 제출년월일 : 2017. 4.

제 출 자:평창군수

### 1. 제안이유

바이럴마케팅 시대에 발맞춰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정홍보의 파급효과 및 주민 참여율을 제고하고, SNS 서포터즈와 각종 행사 참여자에 대한 경품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SNS 개설목적 및 게재사항 규정(안 제3조)

- 군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돕고자 함
- 군정소식 및 홍보,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등 지역정보 게재
- 나. SNS 서포터즈 운영(안 제7조)
  - 30명 이내로 구성, 공개모집 원칙
  - 성별·연령별·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
- 다. 지원 및 표창(안 제9조)
  -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서포터즈에게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 지급
  -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 또는 공무원 표창

#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(조례)
  -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  - 1) 입법예고(2016. 12. 1. ~ 12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 - 2) 규제심사 : 규제사항 없음
  - 3) 부패영향평가: 개선권고 사항 반영
    - 취재필요경비 및 원고료 지급기준 마련
 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권고 사항 반영
    - 서포터즈의 성별·연령별·지역별 특성 고려
    - 서포터즈 대상 SNS 활용관련 및 성 평등 교육 실시

###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평창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군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"소셜네트워크서비스(이하 "SNS"라 한다)"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.
  - 2. "콘텐츠"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, 부호, 음성, 음향, 이미지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.
  - 3. "SNS 서포터즈(이하 "서포터즈"라 한다)"란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의 위촉을 받아 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SNS 활성화를 위하여 취재 활동을 기반으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여 SNS에 게시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SNS 계정의 개설) ① 군수는 평창군민(이하 "군민"이라 한다)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.
  -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2. 교육 · 문화 · 예술 · 체육 · 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
- 3. 군민의견, 군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
- 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4조(SNS 운영의 위탁 및 해지)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에게 보조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5조(게시물의 관리) ① 군수는 SNS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·관리해야 한다.
  -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의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.
  - 1.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
  - 2. 「개인정보보호법」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
  - 3.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
  - 4. 특정기관·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
  - 5.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
  - 6.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

- 7. 욕설 ·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
- 8. 동일하거나 동일 계정이라고 인정되는 계정으로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
- 9.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등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
- 제6조(행사의 운영) 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· 홍보,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나 공모전을 운영할 수 있다.
  - 1.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
  - 2. 축제·문화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
  - 3.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
  - 4.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
 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.
- 제7조(서포터즈의 운영) 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.
  - ②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,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, 성별· 연령별·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.
  - 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하로 하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

- 할 수 있다. 다만, 서포터즈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되는 서포터즈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④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.
- ⑤ 군수는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포터즈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⑥ 군수는 서포터즈에게 SNS 활용 관련 교육 및 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⑦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- 1.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
- 2.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- 3.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
- 4. 그 밖에 질병·장해·사망 등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 하는 경우
- 제8조(서포터즈의 자격) 서포터즈의 자격은 군 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, 취재 및 기사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 - 1. 기사작성 및 블로그, 페이스북 등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
  - 2. 문예창작,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, 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
  - 3. 신문, 잡지사의 기자 또는 원고 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

- 4. SNS 계정 운영이 활발하고 팔로워·친구·방문자 등이 많은 파워 유저 5.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
- 제9조(지원 및 표창) ① 군수는 서포터즈의 취재활동 등에 대하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자에게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. 단, 소속공무원은 예외로한다.
  - ②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,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군수는 우리 서포터즈의 우리 지역에 대한 소양 함양 및 신속한 소식 제공을 위하여 향토지의 구독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④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 또는 공무원에게는 「평창군포상조례」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[별표 제1호]

## SNS 서포터즈 취재경비 및 원고료 지급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구 분	지 급 방 법	비고
취재경비 (여비)	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따르되, 일비·식비·숙박비·자동차 운임 등을 고려하여 실비 지급	
원고료	서포터즈가 제공한 원고가 평창군이 운영하는 SNS에 게재되는 경우에 한하여, 건당 1만원(월 상한액 3만원)의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	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5항 관련)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SNS 서포터즈 취재경비 및 원고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 중 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

#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감사실장 장동기
연락처	(033) 330 - 2206